

# 울산광역시 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 선 | 기 관 의 장 |
| 람 |         |

## 제 1345 호 2022. 5. 26.(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17호[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22호[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고시]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23호[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사항 고시] ..... 5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2-124호[울산광역시 북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고시] ..... 6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690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 열람공고] .... 10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696호[「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04호[공시송달 공고] ..... 18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15호[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 21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16호[행정대집행 계고서] ..... 22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17호[공시송달 공고] ..... 2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33호[공시송달 공고] ..... 24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35호[진장명춘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5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37호[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3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738호[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44
-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공고 제2022-10호[유료 예방접종 수수료 변경징수 공고] ..... 52

|        |   |
|--------|---|
| 안<br>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li>○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br/>☞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공고 → 북구공보</li> </ul> |
|--------|---|

|        |  |  |  |  |  |  |  |  |
|--------|--|--|--|--|--|--|--|--|
| 회<br>람 |  |  |  |  |  |  |  |  |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17호

#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3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점용·사용허가 연월일 : 2022. 5. 23.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통신용 콘크리트 전주 4본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울산광역시 복구 매곡동 795-173, 산113-1번지 일원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1) 일시: 5.8m<sup>2</sup>
    - 2) 계속: 0.5m<sup>2</sup>
  - 나. 기 간
    - 1) 2022. 5. 23. ~ 2022. 5. 25.
    - 2) 2022. 5. 26. ~ 2026. 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한국전력공사 동\*산지사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복구 명촌2\*길 8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22호

## 하천공사 시행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청취 고시

1. 「하천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천 제방 설치공사’에 대한 하천공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하고,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 및 이해관계인(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사명: 금천 제방 설치공사
2. 위 치: 울산광역시 북구 어물동 94번지 일원
3.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제방붕괴에 따른 농경지와 도로 침수가 예상되는 바 홍수 방어 대책 및 재해·재난에 대한 예방사업으로 하천을 정비하고자 함
  - 나. 개요: 하천제방 설치(L=168m, H=2.5~2.9m) 등
4.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연월일
  - 2022. 8. ~ 2022. 12.
6.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기타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그 세목조서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물권의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토지조서(별첨 참조)

## 7.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

| 구 분  | 전 체 | 연차별 투자 계획(백만원) |       |          | 비 고 |
|------|-----|----------------|-------|----------|-----|
|      |     | 기투자            | 2022년 | 2022년 이후 |     |
| 총사업비 | 470 | 470            | 470   | -        |     |

8. 열람기간 : 2022. 5. 26. ~ 2022. 6. 9.

9.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052-241-7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 견 서

『금천 제방 설치공사』

|   |                                |  |
|---|--------------------------------|--|
| 1. 제 목  |                                |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 소                            |  |
| 3. 의 견  |                                |  |
| 4. 기 타  |                                |  |
| <p>『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2. . . .</p> <p>의견제출인 주 소 :<br/> 성 명 : (서명 또는 인)<br/> 전화번호 :</p> <p><b>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b></p> |                                |  |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23호

#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기간연장) 사항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기간연장)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 고시내역

| 허가<br>번호     | 피허가자               |                             | 점용장소                        | 면적<br>(㎡)        | 허가기간 |  | 점용목적                               |
|--------------|--------------------|-----------------------------|-----------------------------|------------------|------|--|------------------------------------|
|              | 성명<br>(생년월일)       | 주소                          |                             |                  | 당초   | 변경                                       |                                    |
| 제2022<br>-7호 | 박판기<br>(56.11.20.) | 울산광역시<br>복구<br>동해안로<br>1606 | 울산광역시<br>복구<br>동해안로<br>1606 | 19<br>(125mm*1개) | 당초   | '18.06.01. ~<br>'22.05.31.               | 활어도소매업<br>운영을 위한<br>해수인배수 관로<br>매설 |
|              |                    |                             |                             |                  | 변경   | <u>'22.06.01. ~</u><br><u>'27.05.31.</u> |                                    |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2 - 124호

#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고시일 : 2022. 5. 26.
2. 고시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기간 : 2022. 5. 26. ~ 2022. 6. 9.
4. 고시내용 :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에 관한 사항  
 ※ 붙임 조서 및 도면 참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를 참조하거나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52-241-728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로명·도로구간 폐지 조서 및 도면 1부.

[붙임]

## □ 울산광역시 복구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조서 및 도면

## 1.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조서

| 구분 | 행정 구역 | 도로 위계      | 도로명 및 도로구간 |              |              |        |       | 기초 간격 (m) | 기초 번호 | 폐지 및 변경 사유 | 비고 |
|----|-------|------------|------------|--------------|--------------|--------|-------|-----------|-------|------------|----|
|    |       |            | 도로명        | 기점           | 종점           | 길이 (m) | 폭 (m) |           |       |            |    |
| 폐지 | 효문동   | 길<br>(주도로) | 울동5길       | 효문동<br>1071  | 효문동<br>1072  | 227    | 3     | 20        | 1~10  | 도시개발사업     |    |
| 폐지 | 양정동   | 길<br>(주도로) | 아랫울동1길     | 양정동<br>126-6 | 양정동<br>816-1 | 143    | 2     | 20        | 1~4   | 도시개발사업     |    |
|    |       |            |            | 아            | 래            | 빈      | 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도로명 및 도로구간 폐지 도면

○ 폐지 현황도(율동5길)



○ 폐지 항공사진(율동5길)



○ 폐지 현황도(아랫울동1길)



○ 폐지 항공사진(아랫울동1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690호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 열람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93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안”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시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6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구분 | 도면<br>표시<br>번호 | 구역명               | 위치                 | 면적 (㎡) |          |        | 비고       |
|----|----------------|-------------------|--------------------|--------|----------|--------|----------|
|    |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신설 | A              | 중산3지구<br>지구단위계획구역 | 북구 중산동<br>938번지 일대 | -      | 증 34,430 | 34,430 | 구역<br>신설 |

2.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4.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052-241-8022)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052-241-8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696호

## 「울산광역시 복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자전거 수리센터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제5호)
- 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내용 신설(안 제14조의2)

#### 3.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1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 1)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제출방법

- 1) 전자우편 : jangjin0809@korea.kr
- 2) 우편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건설과
- 3) 팩 스 : 052-241-7869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과(052-241-78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광역시 복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2. 5.

제 출 자 : 안전건설국장

## 1. 개정이유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자전거 수리센터 용어 정의 추가(안 제2조제5호)

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내용 신설(안 제14조의2)

## 3. 관계법령: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 없음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5월중

바. 입법예고 : 2022. 5 ~6월중(20일간)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그 목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제1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2(자전거 수리센터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 수리센터(이동식 자전거 수리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자전거의 펑크, 림, 교정, 브레이크 조정등 경미한 수리를 할 경우 그 비용을 무료로 하되, 부품의 신설 및 교체를 할 경우는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
|--|---|
|  | <p><u>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다.</u><br/> <u>다만, 부품의 신설 및 교체 비</u><br/> <u>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u></p> |
|--|---|

### 관련 법령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지도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 또는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704호

## 공 시 송 달 공 고

울산광역시 신천동 745-117번지 일원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단점용 및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을 통지하려 하였으나, 불법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교부송달이 불가능하기에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사항 : 공유수면 내 무단점용 및 금지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계고
2. 공고기간 : 2022. 5. 23. ~ 2022. 6. 6. (14일)
3. 집행 일: 공고기간 경과 후 행정대집행(철거) 실시
4.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처분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 52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내지 제4조
6. 공고내역 : 불임참고
7. 유의사항 : 공고기간 경과 후에는 행정절차법 제 15조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봄
8. 문 의 처 :
  - 울산광역시 복구청 건설과(울산광역시 복구 산업로 1010, 2층)
  - 전화번호 : 052-241-7884, 팩스번호 : 052-241-7869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신천동 745-117번지 일원)**



**현장사진**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704호

##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 미상

주소 : 미상

우리 구에 위치한 공유수면 내 귀하께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위반하여 공유수면을 무단점용 및 금지행위를 하고 있는바,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귀하 소유의 불법시설물을 **2022년 6월 6일까지 자진철거**될 수 있도록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공고 기간                                | 대집행 방법                    |
|------------------------------|----------|--------------------------------------|---------------------------|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br>745-117번지 일원 | 무단 경작    | 2022. 5. 23. ~ 2022. 6. 6.<br>(14일간) | 공고기간 완료 후<br>울산 북구청 자체 철거 |

2022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0. 6. 11.>

## 소하천점용 허가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715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         |   |
|---------------------|---------|---|
| 시행자<br>(점용·사용자)     | 상호 및 명칭 | 에스케이텔레콤(주) 동부 infra 본부장   |
|                     | 주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258   |
| 소하천명                |         | 이화천   |
| 공사<br>(점용·사용)<br>개요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1166-1번지   |
|                     | 면적      | 일시: 0.30㎡, 계속: 0.14㎡  |
|                     | 기간      | 일시: 2022. 5. 23. ~ 2022. 5. 29.<br>계속: 2022. 5. 30. ~ 2026. 12. 31. |
|                     | 목적 및 사유 | 인공구조물 설치(통신용 콘크리트 전주 설치)  |

열람서류

1. 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716호

##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2022년 5월 3일,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605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경작물을 2022년 5월 17일까지 원상회복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2022년 6월 6일까지 반드시 원상회복될 수 있도록 「하천법」 제48조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하천법」 제73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위치            | 대상 또는 종류 | 면적   | 대집행 방법    |
|---------------|----------|------|-----------|
| 신천동 745-118번지 | 경작       | 200㎡ | 불법경작 원상회복 |

2022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717호

##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매곡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3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5. 23. ~ 2022. 6. 6.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 재산의 표시       |         | 무단점유현황 |    |      |             | 비 고 |
|--------------|---------|--------|----|------|-------------|-----|
| 소 재 지        | 번지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 | 점유면적<br>(㎡) |     |
| 울산광역시 복구 신명동 | 151-8번지 | 미상     | 미상 | 불법점용 | 350         |     |

####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6. 6. (월)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733호

## 공시송달 공고

하천구역(운곡천)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하고자 하나, 인적사항 파악 불가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5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공고내용:**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2. 5. 25. ~ 2022. 6. 8. (14일간)
3. **공고장소:**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4. **무단점유 현황**

| 재산의 표시       |          | 무단점유현황 |    |      |             | 비 고 |
|--------------|----------|--------|----|------|-------------|-----|
| 소 재 지        | 번지       | 행위자    | 주소 | 점유내용 | 점유면적<br>(㎡) |     |
| 울산광역시 복구 상안동 | 1204-1번지 | 미상     | 미상 | 불법점용 | 16          |     |

#### 5. 공시송달내용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2. 6. 8. (수)까지** 자진 원상복구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같은 법 제9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향후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기한 내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 - 735호

# 진장명촌지구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고기간 : 2022. 5. 26.(목) ~ 2022. 6. 2.(목)

2. 사업내용

| 사 업 내 역   |  |
|---|--|
| <p>가. 사 업 명 : 진장명촌지구 109B 9,10L 근생신축공사</p> <p>나. 사업주체 : 이상백</p> <p>다. 시 공 자 : (주)루안종합건설</p> <p>라. 설 계 자 : 진영건축사사무소</p> <p>마. 감 리 자 : 가이아건축사사무소</p> <p>바. 사업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울산 북구 진장명촌지구 109B 9, 10L</li> <li>○ 대지면적 : 1,007.50m<sup>3</sup></li> <li>○ 연 면 적 : 1,488.18m<sup>3</sup></li> <li>○ 규 모 : 지상 3층</li> <li>○ 세 대 수 :</li> <li>○ 공사기간 : 2022.05.02. - 2022.08.31.</li> <li>○ 허 가 일 : 2022.03.08</li> <li>○ 착공신고수리일 : 2022. 5. 4.</li> <li>○ 공 사 비 : ₩1,718,200,000-</li> </ul> <p>사. 안전점검비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점검비용 : 3,200,000</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초금액 : 원</li> <li>○ <u>예정가격산출(전자입찰방식)</u> : 입찰 참가업체가 입찰시 선택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선택 빈도가 가장 많은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출 평균금액</li> </ul> |

## 3. 안전점검 내용

## 가. 수행예정표

| 항 목      | 횟 수 | 단 가       | 금 액       | 산출근거                                 |
|----------|-----|-----------|-----------|--------------------------------------|
| 항타 및 항발기 | 2   | 1,600,000 | 3,200,000 | 건설공사 안전관리<br>업무수행지침<br>[별표7]안전점검대가요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3,200,000 |                                      |

나. 점검시기 : 시공자와 협의

다. 상기 안전점검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른 점검기준을 준수하여 실시하며, 점검완료 후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4. 입찰접수 개시(마감) 및 개찰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개시일 : 2022. 05. 26.(목) 09:00

나. 전자입찰서 접수마감일 : 2022. 06. 02.(목) 11:00

다. 입찰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

라. 개찰일시 : 2022. 06. 02.(목) 11:00 이후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이용(입찰집행관 PC)

## 바. 유의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류는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직접 접수(접수된 응모서류는 검토하지 않음)하여야 하며 낙찰 후 증빙서류와 응모서류 대조 시 기록누락 및 미 제출된 서류로 인한 불이익(실격처리 등)은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 2)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만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3)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 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4)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은 납부를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같음하며,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약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 나라장터 「동일 IP 중복투찰 제한」적용과 관련하여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하고 있으며,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 나라장터의 개찰결과는 입찰가격에 대한 순위이며 자기평가서의 사업수행능력점수와 합산하여 최종 순위가 확정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상의 개찰결과는 종합평가에 의한 우선순위가 아닌 입찰가격에 따른 낙찰하한율 적용순위이며 낙찰하한율(86.745%)은 사업수행능력 배점에 종합평점 95점이 되기 위한 예정가격 대비 최소입찰가격 비율을 말합니다.

## 5. 사실확인서류 제출기간 및 장소(입찰가격 참가 업체에 한함)

가. 일 시 : 2022. 06. 02.(목) 11:00까지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유의사항

- 1)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증빙자료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서류를 미제출 할 경우 수행기간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 사실확인서류 제출 시 건축분야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자기평가서(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최근 1년간 경력서(협회발행본)를 열람용으로 복사하여(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별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3)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에 발급 또는 작성된 것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열람 . 이의신청 기간 및 장소

가. 기 간 : 2022. 06. 07.(화) 18:00까지(근무시간 내에 한함)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1층)

다. 다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가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항

-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서
- 2) 자기평가표 : 본 공고 자기평가서 상의 자기평가표를 말함
- 3) 참여기술인의 최근 7년간의 경력

※ 상기사항 이외에 대하여는 열람 및 이의신청 불가, 상기사항에 대하여 이의 제기시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제출 할 것(미 명기제출 시 대상제외)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1) 이의신청은 6하 원칙에 의거 "○○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기술자의 최근 7년간 경력 중 ▽▽현장 근무기간이 □□사유로 결격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2) 소명요구를 받은 자는 문서로서만 소명서를 제출할 것(전자문서 가능)
- 3) 이의신청(소명) 관련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은 일체 금지되며, 이를 시도하려는 자는 부정행위를 하려는 자로 간주함.
- ※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방문 열람을 원칙으로 함[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자(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대리인)에 한하며, 반드시 서면(문서)으로 기일 내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함(우편접수 불가, 이의신청과 관련된 방문·전화 상담은 일체 받지 않음, 촬영복사 불가)
- ※ 이의신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결과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신청자, 대상자 모두 해당)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의거 행정제재 처리함.
- ※ 이의신청 기간 이후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반려 처리함.

**7. 응모자격 및 심사기준**

**가. 응모자격**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2-328호\(2021. 3. 8.\)](#) [우리 구 건설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된 업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업종코드\(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업종코드4963\]등록한 업체로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나. 심사기준** : 지정신청한 참여기관 및 기술자 심사기준의 기간계산 적용시점은 당해주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일까지의 기간 및 실적을 기준으로 함.  
(공고일 포함)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및 방법**

**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절차**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 전자입찰서 및 사실확인서류 제출 ⇒ 개찰 ⇒ 열람 및 이의신청 ⇒ 사실확인 서류에 따른 세부평가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통보)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1) 아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하며, 동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공고를 기준으로 함.

| 심사항목   | 기 준 | 심 사 방 법  |
|--------|-----|--|
| 사업수행능력 | 40점 | ○ 평점 = $\frac{\text{평가점수}}{100} \times 40\text{점}$<br>*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  |             |   |
|--|-------------|---|
| <p><b>입찰가격</b><br/>(낙찰하한율<br/>86.745%)</p> | <p>60점</p>  | <p>○ 입찰가격을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평점을 적용한다.</p> $* \text{평점} = 60 - 4 \times \left  \left( \frac{88}{100} - \frac{\text{입찰가격}}{\text{예정가격}} \right) \times 100 \right $ <p>*     는 절대값 표시임.<br/>*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br/>*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한다.<br/>*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100분의 89.25 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55점으로 한다.</p> |
| <p><b>합계</b></p>                           | <p>100점</p> |   |

2) 상기 "1)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유권해석에 의하며,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의 결정에 따름

**3) 적격심사에 의한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선정 함.**

※ 95점 이상이 없을 경우 95점에 가장 근접한 자 지정

4)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용역수행능력평가 관련 사실확인 제출서류는 기한 내 1회에 한해 접수를 받으며, 동 기한 내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서 제외됨.

5)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순위 업체부터 세부 서류심사 및 사실조회를 실시하며, 세부 평가 결과 선 순위 업체가 낙찰자로 지정될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세부평가는 실시하지 않음.

**6) 공동도급은 인정하지 않음**

※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9. 기타 유의사항**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본 기타 유의사항을 필히 숙지하시어 응모서류 제출, 세부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찰을 무효로 하는 사항**

- ①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단, 위임장 및 대리인계를 제출한 자는 제외)
- ② 담합이나 타인의 입찰을 방해,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 방해 등을 한 자의 입찰.
- ③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담당 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 ④ 응모번호 기준으로 1개사가 2개 이상의 입찰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나. 응모서류가 접수된 후에는 교환 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정확히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자기평가서 상의 내용과 증빙자료 상의 기재 내용이 상이할 경우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권자가 판단하여 평가함.(자기평가서가 미흡하게 작성되어 감점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으며, 자기평가서 작성 시 평점 산정근거를 반드시 기재할 것)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는 우선순위업체인 1순위 ~ 3순위까지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보관하고, 그 외 서류는 예정가격 추첨일로부터 2일간(공휴일 제외) 반환하고 그 이후에는 폐기하

오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신청자는 개별 회사서류 관리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라며, 서류 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음.

-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후 사업계획승인 신청의 취하 또는 사업승인의 취소·취하 등의 사유가 발생되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마.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응모자에게는 지정결과를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바.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회사파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안전점검 지정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 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하며, 이 경우 안전점검 수행일을 기준으로 용역비를 정산함.
- 사. 응모서류(신청서 제출시 접수서류)는 총괄표 상의 자기평가점수만 확인하고 서류 검토 및 평가는 하지 않으며, 세부평가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한하여 실시함.
- 아. 자기평가서 작성에 있어 오기 및 법령의 이해부족 등 평점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작성하시기 바람(수정불가)
-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 이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응찰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지정을 취소하고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함
- 차. 공고문 상의 안전점검 비용은 건축물(2종시설물)의 정기·초기안전점검 비용으로, 기타 건설기계·가설구조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이후 관련 기준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함.
- 카.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통보 이후 발생하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점검 내용 및 일정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시공사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 ※ 안전점검 수행기관모집공고에 대하여는 나라장터,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공고에 게시하고 있으며, 정정공고 또는 추가공고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안전점검 수행기관 입찰 당일까지도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축주택과(☎052-241-8014)로 문의바랍니다.

## 【참고자료 1】

## 신규업체 입찰참가자격등록 절차 안내자료

(조달청 고객지원팀)

### ① 유료인증서 발급

- 아래 공인인증기관 중 한 곳을 자율선택 하여 연락 후 전자거래범용기업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일반적으로 인증기관을 직접 방문 필요, 인증서는 매년 11만원씩 납부)

- 코스콤 (<http://www.signkorea.com>) (1577-7337)
- 한국무역정보통신 (<http://g2b.tradesign.net/index.html>) (02-2109-8846~7)
- 한국전자인증 (<http://g2b.crosscert.com/>) (1566-0566)
- 한국정보인증 (<http://www.signgate.com>) (1577-8787)

### ② 입찰참가자격 등록 신청

- 나라장터([www.g2b.go.kr](http://www.g2b.go.kr))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입찰참가자격등록신청' 메뉴에서 모든 항목을 입력하고 저장 후 '송신'(가장 가까운 지방조달청으로 송신) ⇒ '시행문 출력' 클릭하여 출력 ⇒ 출력된 시행문 안내에 따라(대표자 인감도장) 날인 후 관련증빙자료 원본(출력된 시행문 하단에 제출서류가 명기되어 있음)과 함께 송신했던 지방조달청으로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화면에서의 입력방법은 콜센터(1588-0800)로 문의

### ③ 등록 승인 : 송신한 지방조달청에서 서류확인 후 승인

- 승인여부 확인 방법 : 나라장터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등록신청확인 및 시행문 출력메뉴

### ④ 인증서 등록 (발급받은 인증서를 나라장터와 연결하는 작업임)

- 나라장터 접속 ⇒ 이용자등록 ⇒ 조달업체이용자 ⇒ 인증서관리⇒'인증서 신규등록' 메뉴 클릭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후 약관동의 등 간단한 절차를 거치면 인증서 등록이 모두 완료됨
- ※ 인증서 등록이 완료됨으로써 전자입찰 입찰참여가 가능

### ⑤ 나라장터의 각종 전자입찰에 참여 가능 (추후 콜센터에 문의하여 직찰 등을 위해 사용인감 등록 요망)

===== <참 고 사 항> =====

#### ※ '입찰 등록증' 출력 또는 입찰참가자격 변경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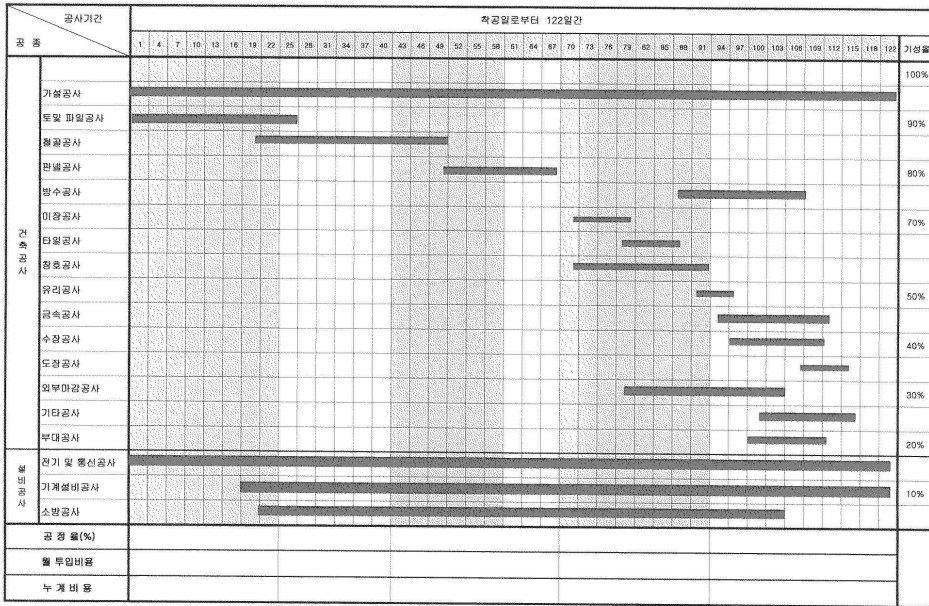
- 출력 메뉴 : 나라장터 접속 ⇒ 로그인 ⇒ (좌측 최상단) 나의나라장터 ⇒ '업체정보 수정관리/등록증출력' 메뉴
- 입찰참가자격 변경
  - 업체 스스로 수정 가능한 항목 : 공급물품,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홈페이지주소
  - 나머지 항목은 입찰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항목으로 반드시 조달청 승인 필요

**전자입찰 및 나라장터 이용 문의 : 정부조달콜센터 1588- 0800**



예 정 공 정 표

Project : 복구 진강명촌지구 109필력 9,10필트 근생신축공사



\* 순수공기 이며 우천 및 견제지반시 공기가 중단 될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737호

# 울산광역시 복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개정됨('22. 1. 13.시행)에 따라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별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통·반장 임명사항에 관한 조문 삭제(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2)
- 나. 통·반장 상해보험 가입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 다. 통·반장 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안 제11조제2항)
- 라. 통장 신분증 서식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1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소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소통과
- 전화번호 : 052-241-7264, 팩스번호 : 052-241-726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           |
|--|--|------|-----------|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br>(개인/단체)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      |           |
| 검토의견<br>(의견제출내용)   |  |      |           |
| 「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      |           |
| 2022년    월    일  |  |      |           |
|  |  | 제출자  | (서명 또는 인)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           |

# 울산광역시 복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2. 5. .  
제 출 자 : 행정지원국장

##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개정됨(‘22. 1. 13.시행)에 따라 통·반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별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통·반장 임명사항에 관한 조문 삭제(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2)
- 나. 통·반장 상해보험 가입 근거 마련(안 제10조제3항)
- 다. 통·반장 상여금 지급 기준 마련(안 제11조제2항)
- 라. 통장 신분증 서식 삭제(안 별지 제1호서식)
-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정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5월중
- 바. 입법예고 : 2022. 5. 26. ~ 6. 15.(20일간) (예정)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복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아니된다”를 각각 “안 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 분기별 표창수여 및 연 1회 이상”을 “포상 수여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 중 “통·반장”을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중인 통·반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④ 반원 중 지식층 인사의 협조 참여를 필요로 하는 지역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⑤ 반장 및 명예반장이 자격요건과 그 임무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제6조(통·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삭 제>

1.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2. 사망 또는 통·반 관외로 전출할 때

3. 해당 통·반의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4. 그 밖의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도덕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의2(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삭 제>

② 통장신분증은 통장 직무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장의 임기 만료 및 해촉 되었을 경우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 사항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비밀유지) ① 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편의제공) ① (생략)

② 통장 및 우수반장에게는 역량배양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해서 분기별 표창수여 및 연 1회 이상 선진지 견학기회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수당 등) ① (생략)

제9조(비밀유지) ① -----  
-----  
안 된다.

② -----  
-----  
----- 안 된다.

제10조(편의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  
----- 포상 수여 및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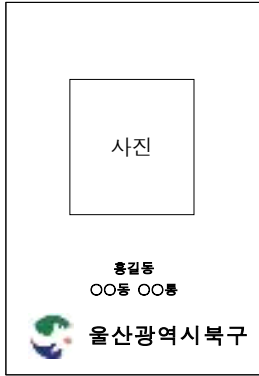
③ 구청장은 통장의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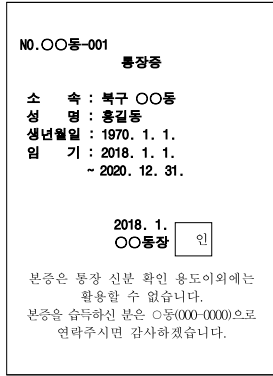
②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  
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  
다.

[별지 제1호서식]

< 전 면 >



< 후 면 >



가로 5.5cm, 세로 8.5cm  
(사진 가로 3.5cm, 세로 4cm)

②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통·반장-----.

<삭 제>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을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리의 구역은 자연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면[이하 “행정면”(行政面)이라 한다]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동·리에서는 행정 능력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이하 “행정동”이라 한다)·리(이하 “행정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행정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2 - 738호

# 울산광역시 복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개정됨('22. 1. 13.시행)에 따라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통·반장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통장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 다. 통장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통장신분증 서식(안 별지 제1호서식)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4. 제정규칙안 : 따로 붙임

## 5.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6. 15.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주민소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주민소통과
- 전화번호 : 052-241-7264, 팩스번호 : 052-241-726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           |  |
|--|--|-----------|--|
| 조례명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           |  |
| 의견 제출자   | 성 명<br>(개인/단체)   | 전화번호      |  |
|  | 주 소  |           |  |
| 개인정보취급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동의 |           |  |
| 검토의견<br>(의견제출내용)   |  |           |  |
|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  |           |  |
| 2022년    월    일  |  |           |  |
| 제출자  |  | (서명 또는 인) |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           |  |

# 울산광역시 복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          |  |
|----------|--|
| 의안<br>번호 |  |
|----------|--|

제출연월일 : 2022. 5. .  
제 출 자 : 행정지원국장

## 1. 제정이유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가 개정됨(22. 1. 13.시행)에 따라 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통·반장 제도의 운영을 원활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안 제1조)
- 나. 통장의 위·해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 다. 통장 신분증 발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통장신분증 서식(안 별지 제1호서식)

##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 4. 제정규칙안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해당 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 없음.
- 다. 물가대책 심의 : 해당 없음.
- 라. 관련부서 합의 : 해당 없음.
- 마. 성별영향평가 분석 : 2022. 5월중
- 바. 입법예고 : 2022. 5. 26. ~ 6. 15.(20일간) (예정)



##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복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장의 임 명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장의 위촉) ① 통에는 통장,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통·반장은 해당 통 또는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역발전 및 주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해당 통·반 주민의 자율의사에 따라 선출되었을 경우, 동장은 선출된 사람을 통장 또는 반장으로 우선 위촉할 수 있다.

③ 동장은 통장을 위촉한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3조(통·반장의 해촉) 동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통·반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개인사정으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와 2개월 이상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경우
2. 사망 또는 통·반 관외로 진출한 경우
3. 해당 통·반의 세대주 과반수의 불신임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구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거나, 반도덕적 행위로 품위를 손상 시키는 등 동장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통·반장의 임기)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2회의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신청자 및 책임자가 없을 경우 재연임할 수 있다.

제5조(통장신분증 발급) ① 동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통장신분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통장신분증은 통장 직무 수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장의 임기 만료 및 해촉 되었을 경우 동장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③ 통장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 및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 전 면 >

사진

홍길동

○○동 ○○통

울산광역시 북구

< 후 면 >

NO.○○동-001

## 통장증

소 속 : 북구 ○○동

성 명 : 홍길동

생년월일 : 1970. 1. 1.

입 기 : 2020. 1. 1.

~ 2022. 12. 31.

2022. 1.

○○동장인 인

본증은 통장 신분 확인 용도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습니다.  
본증을 습득하신 분은 ○○동(000-0000)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로 5.5cm, 세로 8.5cm  
(사진 가로 3.5cm, 세로 4cm)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공고 제2022 - 10호

##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 변경징수 공고

「2022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제 4조(약가)의 규정에 따라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0일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 1. 제정이유

질병관리청 백신수급과-416(2022.2.28.)호, 389(2022.2.24.)호와 관련하여, 기존 대비 2022년 국가예방접종 백신 조달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유료 예방접종 수수료를 변경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2. 예방접종 수수료

| 접종명                | 용량<br>(vial)   | 백신단가   |                  | 변경전<br>징수액 | 징수<br>결정액 | 비고          |
|--------------------|----------------|--------|------------------|------------|-----------|-------------|
|                    |                | 기존     | 변경<br>(조달수수료 별도) |            |           |             |
| B형간염<br>(만 10세 이하) | 0.5ml          | 2,620원 | 2,880원           | 2,500원     | 2,900원    | 1백원미만<br>절상 |
| B형간염<br>(만 11세 이상) | 1ml            | 4,164원 | 5,040원           | 5,000원     | 5,100원    |             |
| B형간염<br>(투석환자)     | 2ml<br>(1ml*2) | 8,328원 | 10,080원          | 10,000원    | 10,200원   |             |
| 장티푸스               | 0.5ml          | 5,000원 | 8,000원           | 5,000원     | 8,000원    |             |
| 신증후군<br>출혈열        | 0.5ml          | 8,180원 | 8,160원           | 7,000원     | 8,200원    |             |

#### 3. 변경징수일: 2022. 6. 1.(수)부터 시행